

상해 진출기업 통관 사례 및 중국의 전자통관 절차

대중국 진출업체가 급증하면서 진출업체의 통관 애로사항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본 내용은 중국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 보내온 상해 진출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처리결과 내용과 중국의 전자통관 절차 등을 정리한 것으로 대중국 진출업체들의 수출관련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상해 진출기업 통관 애로사항 처리 사례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CKD로 수입하여 조립한 후, 중국에 진출한 현대 기아와 북경 현대에 납품하는 인지기 차배건 유한공사(총경리·박동수)가 주상하이총영사관에 통관애로사항을 알려온 바에 의하면, 지난 11월 8일 통관사를 통해 상해 오송해관에 수입 신고했으나 해관으로부터 HS코드를 잘못 신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 따라서 이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고서류를 모두 취소하고 기납부한 세금도 환급 신청한 후, 새로운 통관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15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통관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15일 이상이 소요될 경우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불가능하게 될 실정이었다.

이에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즉시 상해 오송해관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해해관 관세처와 협조하여 기존의 신고서를 취하하고 기납부 세금을 환급처리(10일 소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고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한 후, 통관하는 방식으로 12월 3일에 통관을 완료했다.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 신고서를 실시간으로 정정하여 즉시 처리하나, 중국은 신고서 오류·정정시스템이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통관사는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잘 모르고 관행화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15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이 수입물품 도착후 통관완료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는 능력있고 우수한 통관사(운수법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주, 곤산, 태창, 양주 등 상해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통관을 더욱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의 보세운송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주상하

이충영사관에서도 보세운송제도를 진출기업에게 안내하는 한편, 상해해관측에도 우리 진출기업에 대하여 동 제도를 적극 적용해 주도록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 국 의 전 자 통 관 절 차

중국해관은 지난 2001년 1월 1일 새로운 통관절차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종전의 분산서류심사 방식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집중심사방식으로 변경했다. 종전 예측세관(우리의 경우 2급지 세관)에 의한 신고내용 서류심사방식에서 직속세관(본부세관)의 서류심사센터(컴퓨터)에 의한 자동심사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종전에는 세관원이 서류 심사하여 검사여부 등을 결정했으나 새로운 방식은 전산 및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결정한 후 예측세관은 그 결정에 따라 서류 접수 및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통관원가 절감 및 신속통관에 기여했다.

1. EDI 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신고자(통관사 또는 관세사, 자기 명의 신고 가능)는 '수출입화물신고서', '수입화물가격신고서'를 우선 서면으로 기입하고 서명한 후,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전자 입력한다. 전자입력에는 단말기 입력, 자진 EDI 방식 입력, 위탁 EDI 방식 입력의 세 가지가 있다. 입력내용은 컴퓨터시스템에서 자동 심사한다.

2. 직속세관의 집중심사

직속세관 서류심사센터는 전자신고를 접수하여 신고기업과 신고인의 자격을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인준한 후 자동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방법은 규범성 심사, 전문화 심사 두 종류가 있다.

3. 서류접수 및 세금징수

직속세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세관은 신고인에게 '현장 신고서 제출' 정보를 컴퓨터로 통보한다. 신고인은

'수출입화물신고서' 및 '수입화물가격신고서'를 출력하여 규정에 의한 서명 및 첨부서류를 구비한 후 예측세관의 접수심사 및 세금징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심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납세의무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4. 물품검사

수출입화물이 검사선별시스템 등에 의하여 화물검사 대상품목으로 결정되면 예측세관은 '검사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검사과장은 검사시스템에 의하여 검사직원을 지정하고 '검사지정서'를 발행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고 세금이 납부되면 통관완료절차를 실시한다.

5. 통관완료 절차

세관은 통관절차완료시스템(REL)에 의하여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완료한다. 이 과정에서는 신고서에 통관완료의 날인, 서명 및 완료일시 기입, 시스템에 의한 '수출입 허가증' 대조, 선하증권 등의 내용 전산등록, 화물의 통관일련번호 부여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통관일련번호에 의하여 세관의 감시창고 및 검문소에서 화물을 관리하며, 신고인은 통관일련번호에 의하여 화물을 반출하거나 운송한다.

중 국 의 전 자 통 관 관 리 방 식

중국의 전자통관절차의 통관관리는 통관이전관리, 통관과정관리, 통관이후관리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1. 통관 이전(以前)관리

수출입기업은 사전통관절차로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 및 수출입화물의 국경 통과 이전에 다음 사항을 세관에 등록하거나 세관의 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 항구, 항공운송기업, 국제우체국, 통관역, 육로수출입통로 등 세관의 감시관리장소 또는 감시관리창고의 지정 심사 및 등록

- 불개항 지정 등 심사 및 등록
- 세관감시관리창고 및 각종 보세창고의 심사 및 등록
- 보세운송화물 감시관리장소 및 통로, 보세운송기업, 보세운송수단의 심사 및 등록
- 특송화물운송의 운영인 및 감시관리창고의 심사 및 등록
- 통관사 및 통관기업의 심사 및 등록
- 감면세 대상기업의 심사 및 등록
- 가공무역계약서 심사 및 등록
- 가공무역보세공장 및 공장내 원료 보관 보세창고의 심사 및 등록
- 사전상품분류결정서 심사 및 등록
- 면세대상상품 수입계획 심사 및 등록
- 각종의 허가증명 등록

2. 통관과정관리

이 단계에서는 화물관리, EDI 전자문서 신고, 집중심사, 서류접수 및 세금징수, 물품검사, 통관완료 절차를 의미한다.

3. 통관 이후(以后) 관리

이 단계에서는 직속세관이 통관완료이후에 통관절차의 감독 및 평가, 그리고 통관관련요소의 분석 등 종합심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 관리방식은 통관데이터의 통계화·분류·재심사·종합분석, 위험관리·법집행 평가 및 회계·감찰, 통관절차의 오류개선, 밀수 및 탈세 적발, 통관관리 허점발견, 위험방지대책 및 개선 조치를 제시, 진일보된 통관절차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광학세계』 원고모집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세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학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안내 -

1. 원고 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이달의 독자, 수필 등
 2. 원고 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 마감 : 수시 접수중
- ※ 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

연락처 :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편집부
 TEL : (02)581-2321 FAX : (02)588-7869
 이메일 : pjy@koia.or.kr/koma94@chollian.net